

근 보 증 서

년 월 일

채 권 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

본인확인

연대보증인 _____ (인)
주 소

본인확인

-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미리 뒷면에 기재된 "보증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권자(대한민국내의 모든 지점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에 관한 다음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채권자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가계용) 및 다음 제 1 조제 1 항제 2 호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 1 조 보증채무의 내용

(1)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1. 채무자: 성명

주소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함)를 보증하기로 한다.

특정근보증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아래 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 때에는 그 채무 포함)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	---	----	------	---	---	----	-----

한정근보증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거래

3. 근보증 한도액

금	원
---	---

4. 근보증 결산기

채권자는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한다.

지정형

20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함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함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다음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한 부분은 제 1 항 제 2 호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6. 기타 채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제 2 조 보증한도액의 축소

피보증채무에 관한 약정서의 해지, 해제 기타의 사유로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경우**에 채무자가 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위 제 1 항의 보증한도액을 그에 상응하게 축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곧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다만,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보증한도액 축소의 효력은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이 약정서에 그 변경을 기재한 때에 발생한다.

제 3 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일도래 전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8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기업자금의 경우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청구사유 발생 포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자에 대항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4 조 대위권 행사

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한다.

제 5 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 (1)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따로 보증 또는 기타의 담보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 또는 기타의 담보제공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서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 (2)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제 6 조 담보 등의 변경 · 해지 · 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하거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채무자의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 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 변제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 해제할 수 있기로 한다.

제 7 조 손해의 담보

채무자의 법인격 또는 차입권한의 흡결, 채무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의 흡결 혹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않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그와 같은 흡결 또는 규정이 없었더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였을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가 입은 일체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 보증인의 본조에 의한 책임에 대하여도 이 약정서의 각 조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언어

이 약정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되고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합니다.

제 9 조 특약사항

보증인 : (인)

※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3.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보증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차주)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경우, 차주가 대출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채권자)은 차주에 앞서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갚도록 강제(예: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범위

특정채무보증은 귀하가 현재 보증하는 대출과목, 대출금액 등이 정하여져 있는 개별여신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며, 여신을 연기하거나 다시 취급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할 수 없습니다.

근보증은 채무자와 은행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근보증은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한정근보증은 보증계약서에 정한 피보증채무 범위 내에서 차주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이미 발생하여 현재 상환이 되지 않은 채무 포함) 및 앞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하게 되므로 그 책임이 크며 피보증채무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 약정일자가 정하여진 특정한 여신거래 (예: 년 월 일자 무역어음대출약정)
 - 당행 여신을 연기할 수 있으나 이를 다시 취급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할 수 없습니다.
 - 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 (예: 무역어음대출거래)
 - 당행 여신을 연기하거나 다시 취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할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할 수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

계약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읽으신 다음 피보증채무범위, 보증기간 등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귀하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보증서, 약정서 등)상 보증금액을 자필기재 또는 확인하시고 서명란에도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약정서 사본교부

계약체결후에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면 담당직원에게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